

의안번호	2212471
의 퇴 인	정준호 의원
회 답 일	2025. 10. 2.
추계번호	25F470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조정
및 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기업규모별 상향조정하고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수는 2027년 133.1억 원, 2029년 120.9억 원 3년간 총 380.9억 원(연평균 127.0억 원)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동 규정은 3년간 적용되므로 2027~2029년까지 세수효과 발생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: 소득세 및 법인세, 2027~2029년

(단위: 억 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통합고용세액 중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조정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29조의8 제5항)	133.1	126.9	120.9	380.9	127.0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9조의8제5항 (통합고용세액공제)	-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기업규모별 공제금액 상향조정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- 공제금액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 - 적용기한: (현행) 중소기업 1,300만 원, 중견기업 900만 원 → (개정안) 중소기업 1,500만 원, 중견기업 1,100만 원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29조의8 제5항 (통합고용세액공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, 세수 효과는 신고 및 납부시기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
- 육아휴직 복귀자는 2024년 신고기준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기업에 대한 감면실적이 향후 육아휴직 후 복귀 빈도수 연평균 증감율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
 - 2024년 신고기준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의 경우 전액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고 가정
 - 2024년 신고기준 감면실적을 토대로 기업규모별 공제액 변화를 반영하여 2025년 과세연도 공제액을 추정하고, 육아휴직 후 복귀 빈도수의 연평균 증감율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
 - 고용노동부의 ‘육아휴직 후 복귀형태’ 자료에서 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, 전체 사업체의 휴직 후 복귀 빈도수 연평균 증감율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하여 세수효과 추계

3. 상세 추계내역

1) 제도 개요 및 실적

- (제도개요)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9년에 도입되었으며, 2023년부터 고용중대 세액공제 등 다른 고용 관련 세제지원 항목과 통합고용세액공제에 통합되어 시행 중
 - (개정연혁) 중소·중견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2018.12.24. 신설된 규정으로 2022.12.31.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
 - 2018.12.24. 신설: 육아휴직 복직자의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(중소기업 10%, 중견기업 5%)
 - 2020.12.29. 일부개정: 2022.12.31.까지 육아휴직 복직자의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 공제율 상향(중소기업 30%, 중견기업 15%)
 - 2022.12.31. 일부개정: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
 - (현행규정)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1,300만 원, 중견

기업 9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

- 적용기한: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

2) 추계방법

□ (감면실적) 국세청이 제출한 2024년 신고기준 통합고용세액공제 항목 중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감면실적은 130.8억 원

-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2022.12.31.까지 복직 시키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속하는 달까지 공제

[표 3]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: 2023~2024년

(단위: 억 원)

		조특법 §29조의3②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		조특법 제29조의8⑤ 통합고용세액공제
		2023	2024	2024
소득세		25.0	8.5	46.8
법인세	중소기업	27.1	12.9	45.0
	중견기업	24.4	0.4	39.0
	소계	51.5	13.3	84.0
합계		76.5	21.8	130.8

자료: 국세통계포털 및 국세청 제출자료

□ (세수효과 추정) 향후 세액공제액은 최근 3년('21~'23)간 육아휴직 후 복귀 빈도수의 연평균 증감율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
- 소득세 공제액은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전액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
- 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 전체 사업체의 육아휴직 후 복귀 빈도수 연평균 증감율에 따라 향후 육아휴직 복귀 근무자 수가 변동한다고 가정
 - 최근 3년('21~'23)간 전체 사업체의 육아휴직 후 복귀 빈도수 연평균 증감율은 △4.7%
 - 고용노동부 자료는 종자사 수를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를 구분하고 있으나,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에 따르면 2015년 중소기업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고용 규모 기준과 차이가 상당¹⁾하여 사업체 규모에 따라 구분하지 않음

1) 김정우, “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한 대·중소기업 식별과 기업규모별 고용현황”, 「KLIPANEL 제24호 (2023-03)」, 한국노동연구원, 2023.10.16.

[표 3] 전체 사업체의 육아휴직 후 복귀 빈도수: 2019~2023년

(단위: 개, %)

	복귀형태	2019	2020	2021	2022	2023
전체 사업체	전체	496,873	516,236	515,710	436,191	463,305
	① 지속 근무	423,897	428,642	410,716	370,243	332,504
	② 단축 근무	14,650	13,408	14,652	19,860	36,006
	①+② 합계	438,547	442,050	425,368	390,103	368,510

전년대비 ①+② 합계 증감율 (0.80) (△3.77) (△8.29) (△5.54)

자료: 고용노동부, 「육아 등 돌봄지원제도 활용 실태」, 각 연도

- 2024년 신고기준 감면실적을 토대로 육아휴직 후 복귀 빈도수의 연평균 증감율에 따라 추계

[표 4] 신고연도 기준 감면실적 추정치: 2027~2029년

(단위: 억 원)

		2027	2028	2029
소득세		46.7	44.5	42.4
법인세	중소기업	45.0	42.9	40.9
	중견기업	41.4	39.5	37.6
합계		133.1	126.9	120.9

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기업규모별 상향조정하고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수는 2027년 133.1억 원, 2029년 120.9억 원 3년간 총 380.9억 원(연평균 127.0억 원)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: 소득세 및 법인세, 2027~2029년

(단위: 억 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통합고용세액 중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조정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29조의8 제5항)	133.1	126.9	120.9	380.9	127.0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수인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수인	02-6788-4839	suin2025@assembly.go.kr